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352 제출년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귀농·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」를 정비하여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」에 반영하여 정비함
 - ㅇ 조례안 제1조
 - "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 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"
- 나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명 변경에 따라 「평창군 귀농· 귀촌인 지원 조례」에서 사용되는 그 인용 문구를 변경하고, "귀농 어업인", "귀촌인" 등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함

- 조례안 제2조제1호. 제2호. 제4호 및 제5호
 - 제2조제1호 농어업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
 - 제2조제2호 농업인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
 - 제2조제4호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
 - 제2조제5호 귀촌인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
- 다. 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」에 제3조에 따른 평창군 귀농· 귀촌인 지원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구성에 관한 사항
 - 조례안 제3조제2항
 - "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서로 뽑는다</u>."를"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"로 개정
 - 조례안 제3조제4항
 - "간사는 <u>인력육성담당 주사</u>로 한다."를 "간사는 귀농귀촌담당으로 한다."로 개정
- 라.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
 - 조례안 제4조제1호
 - "<u>유치</u>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"를 "<u>귀농·귀촌인 유치</u>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"로 개정
 - 조레안 제4조제2호
 - "<u>자격</u> 및 사업계획 심의"를 "귀농·귀촌인 지원 대상 및 사업계획 심의"로 개정
- 마.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
 - ㅇ 조례안 제5조제2항
 - "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

대행한다."를

"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</u>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"로 개정

- 바.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
 - ㅇ 조례안 제7조제3항
 - "<u>의장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"를
 - "<u>위원장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"로 개정
- 사. 귀농·귀촌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사항
 - ㅇ 조례안 제10조제1호
 - "<u>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</u>"을 "귀농·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"으로 개정
 - 조례안 제10조제6호
 - "그 밖에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<u>필요한</u> 사업"을 "그 밖에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<u>군수가 필요하다고</u> 인정하는 사업"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별첨_일부발췌)
- 2)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별첨_일부발췌)

- 3) 수산업·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별첨 일부발췌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17. 4. 25. ~ 5. 18. 제출된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검토완료(행정규제 아님)
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부패유발요인 없음)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권고 사항 일부 반영
 - 귀촌인의 정의에서 직업 유무 삭제 : 반영
 -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및 여성농업인 참여 명시 : 미반영
 - *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이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됨, 양성평등 참여가 실행되도록 추진.
 - 지원범위에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추가 : 미반영
 - * 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」의 귀농·귀촌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,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사항으로 "지역 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"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고 포괄적임, 또한 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제6호에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
 - 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귀농・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"농어업"(이하 "농업"이라 한다)이란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- 2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- 4. "귀농어업인"(이하 "귀농인"이라 한다)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귀촌인"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서로 뽑는다"를 "호선(互選)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

"인력육성담당 주사"를 "귀농귀촌담당으"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귀농ㆍ귀촌인 유치

제4조제2호 중 "자격"을 "귀농ㆍ귀촌인 지원 대상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사고가 있을 때"를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"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의장"을 "위원장"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"을 "다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귀농 · 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

제10조제6호 중 "필요한"을 "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•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_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과 농 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다.
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 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 - 2. "농업인"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 - 3. (생략)
 - 4. "귀농인"이란 농어촌 외의 지 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평창군

개 정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귀 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 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 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"농업"이란 「농어업·농어 1. "농어업"(이하 "농업"이라 한 다)이란 「귀농어・귀촌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 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 - 2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 다.
 - 3. (현행과 같음)
 - 4. "귀농어업인"(이하 "귀농인" 이라 한다)이란 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

- 록을 전입(이하 "전입" 이라 한다)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 다.
- 5. "귀촌인"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로써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 업경영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 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 제3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 략)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 되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 는다.
 - ③ (생략)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 는 인력육성담당 주사로 한다.
- 귀농ㆍ귀촌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 1. <u>귀농·귀촌인 유치</u> -----

(이하"군"이라 한다)에 주민등 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> 5. "귀촌인"이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 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과 같음)	
②	
	<u>호선(互</u>
選)한다.	
③ (현행과 같음)	

- -- 귀농귀촌담당으----. 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제4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-

획 심의

- 2.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. ~ 5. (생략)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생 략)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・② (생 략)
 -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· 의결할 수 있다.
- 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
 - 2. ~ 5. (생략)
 - 6.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

	_		

- 2. 귀농・귀촌인 지원 대상 --3. ~ 5. (현행과 같음)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
 -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-
-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 - ③ 위원장----
- 제10조(지원) 군수는 귀농ㆍ귀촌 제10조(지원) 군수는 귀농ㆍ귀촌 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귀농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 원
 - 2. ~ 5. (현행과 같음)
 - 6. -----
 - -----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--

관계법령 발췌

■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귀농어・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어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농업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.
- 2. "농어촌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
- 3. "귀농어업인"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귀촌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 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7조(귀농어업인·귀촌인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■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농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.
- 4. "생산자단체"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5. "농촌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 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업 인력 육성,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 <법률 제13383호, 2015.6.22.> (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)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"을 "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" 으로 한다.

■ 수산업·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수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
 - 가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 - 나. 어획물운반업: 어업현장에서 양륙지(揚陸地)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
 - 다. 수산물가공업: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, 사료나 비료, 호료(糊料)·유지(油脂)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·재료나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
 - 라. 수산물유통업: 수산물의 도매·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·배송·포 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·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
- 2. "수산인"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어업인"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어업경영체"란 어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.
- 5. "생산자단체"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6. "어촌"이란 하천·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 - 가. 읍·면의 전 지역
 - 나. 동의 지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- 7. "수산물"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
연락처	(033) 330 - 1304